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6. 1. 8.>

화약류제조(관리) 보안책임자 [ ]선임 [ ]해임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0일

사업의 종류		사업소 명칭	
사업소 소재지	(전화번호 :)		
제조보안 책임자	성명	면허의 종류	
	생년월일	면허번호	
	면허 등급	교부 관청	
관리보안 책임자	성명	면허의 종류	
	생년월일	면허번호	
	면허 등급	교부 관청	

취급 및 취급 장소		
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의 범위		
해임 및 변경 사유		선임·해임·변경일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경 찰 서 장
시·도경찰청장 귀하

첨부서류	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